

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 산업시설용지 처분(매각)공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‘산업집적법’)」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,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(정읍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)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.

2023년 02월 24일(금)
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

1. 매각용지 현황(산업시설구역/공장용지)

| 산업단지명 | 업체명 | 사업장 소재지 | 처분내용 | 처분가격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| (유)한승 하이** |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1502-4번지 | 대지 4,248.7m ² (건축물 없음) | 570,870,000원 |

2. 처분사항

가. 처분가격 : ₩570,870,000(일금 오억칠천팔십칠만 원정)

나. 대금지불조건 : 일시납 *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

*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하나, 매매계약 및 등기(소유권)이전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(30일) 이내 완료하여야 함

다. 처분관련 유의사항

- 매수자는 「산업집적법」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처분을 제한받게 됨
- 본 처분 건 관련,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,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

3. 신청자격

가. 「산업집적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18호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69호)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

나. 우선 유치대상(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)

-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
-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(확장) 기업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(신청일 현재) 창업 승인된 기업
- 「국토계획법」 상 주거, 상업,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
-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

※ 신청인은 매각용지의 개발·실시계획, 지구단위계획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

다. 입주제한([참고2] 참조)

- 토지이용계획 사항(관련 법령 확인)

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지역·지구등 지정여부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·지구등 | 도시지역, 준공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2016-12-16), 소로1류(폭 10m~12m)(접합), 중로2류(폭 15m~20m)(접합), 특수도로(보행자전용도로)(접합) |
| |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등 | 가축사육제한구역(절대금지지역(모든축종제한)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산업육성구역(2020-11-17)<연구 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>, 개발촉진지구(2015-01-09)<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> |

- 생산공정 단계별 「악취방지법」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

*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

○ 도금 및 도장업종

○ 「산업집적법」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

4. 매각일정 : 선정 후 즉시 매도자와 매매계약 체결

| 구 분 | 기 간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처분공고 | '23.02.24(금) ~ 03.16.(목) |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시스템 (ims.innopolis.or.kr) |
| 입주신청 | '23.02.24(금) ~ 03.16.(목) |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방문 접수(3/16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 |
| 입주심사 | '23.3월 4주차 | 별도 공지 |
| 양도대상자 선정통보 | '23.3월 4주차 | 별도 공지 |
| 매매계약 체결 | 양도대상자 선정통보 후 | 양도자-양수인 |
| 연구개발특구 입주계약 체결 |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내 | 특구재단-양수인 |
| 소유권 이전 | 양도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내 | 양도자-양수인 |

* 상기 일정은 입주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. 공고기간

가. 공고일 : 2023.02.24.(금)~03.16.(목) 21일간

나. 접수처 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, 전북테크비즈센터 3층
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(문의: 063-905-9745)

다. 제출방법 : 방문 접수 (3/16일(목)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

○ 제출서류 일체를 제본형태의 책자로 제작하여 5부 제출 요망
(제출서류 1부에는 원본포함 필수)

- * 접수일 당일 신청 건이 집중될 것을 대비, 사전 접수 요망
- *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라. 제출서류 : 공통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
| 공통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○ 법인등기부등본, 주민등록등본(개인), 사업자등록증 사본 ○ 인감증명서(법인/개인으로 본인발급에 한함), 사용인감계(사용 시) | |
|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(해당기업에 한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2년, 표준재무제표 증명원(국세청) ○ 공장등록증명원(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) ○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(1~5종) ○ 신기술(NEP,NET), 특히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○ 과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(한국무역협회, 거래은행 발행) ○ 입주우선순위에 해당할 경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| 각5부 |

*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6. 입주심사

- 가. 선정방법 : 신청자 입주자격 적격 검토 이후 적격대상이 다수일 경우, 「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76호)」에 따른 입주기관심의회의에 심의 후 대상자 선정
- * 비경합(1개 기업 접수)일 경우, 연구개발특구에서 적격 검토 후 선정할 수 있음

나. 심의내용 : 입주자격 여부 및 사업계획평가

* 입주심사 평가기준 : [참고3] 참조

다. 선정일 : 별도 공지

* 접수마감 결과에 따라, 심사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

라. 기타내용 : 매수자로 선정된 선순위 기업이 입주계약, 매매계약을 포기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될 경우 후순위를 양도대상자로 선정

7. 매수 자격상실

- 가.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나.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다.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(또는 기업체)으로 신청한 경우

8. 기타 주의사항

- 신청자는 특구재단이 입주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(등기이전)을 완료하여야 하며,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(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)
-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하에 협의·처리하여야 함
-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·건축물 현황, 압류여부, 업종, 환경 인·허가 여부,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 사업지구内外의 입지여건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·행정적·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
-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(계약)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·행정적·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(계약) 주체에 있음
-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

-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,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
 - ※ 입주기업체(처분신청자)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(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)
- 매수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,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, 환경·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,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법령과 건축 관련 법령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·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신청자에게 있으며,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야 함
 - ※ 공고일 이후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·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름
-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·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, 환경관리 등 신청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
- 토지사용 시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·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,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함
- 우수·오수·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·연결하여야 하며, 토지 사용 중 도로·상하수도·경계석·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·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
-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함
- 가스, 통신, 전력, 용수, 유선방송,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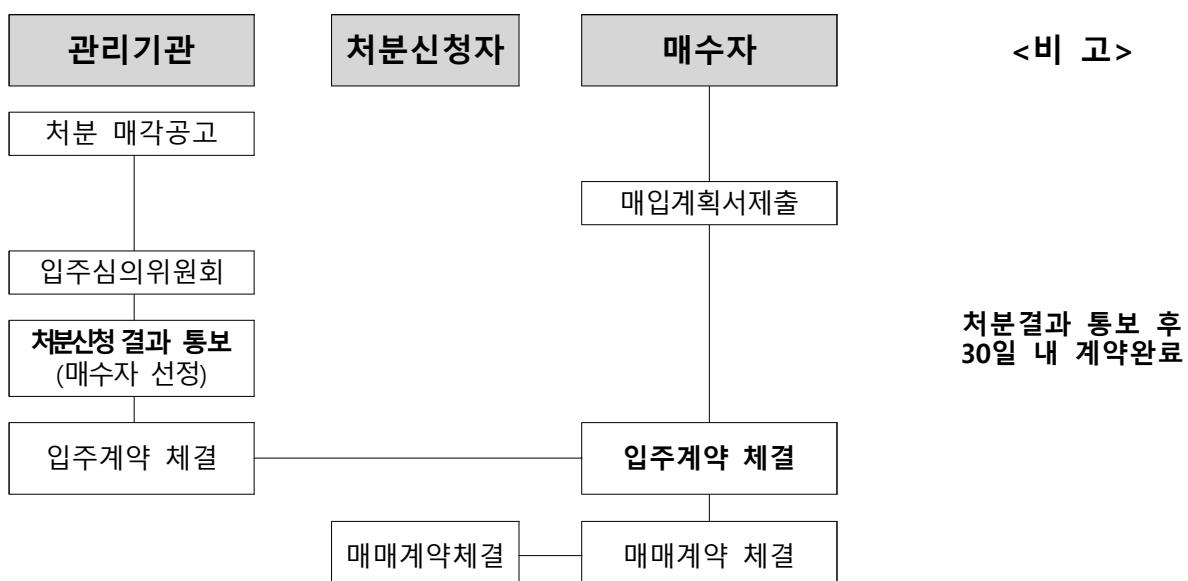
직접 신청하여야 함

-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시행령, 시행규칙), 「산업단지 관리지침」, 정읍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·실시계획·지구단위계획,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에 따름
-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9. 담당자 연락처

| 구 분 | 담당자 | 주소 및 연락처 |
|--------|---|---|
| 관리 기관 |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 특구본부, 기획경영실 권용수 연구원 - 제출서류 관련 문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, 전북테크비즈센터 3층 전북특구본부· 063-905-9745 |
| 처분 신청자 | (유)한승하이테크 - 대금지불, 계약, 토지 현황, 압류여부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전북 정읍시 소성면 신천1길 21· 063-537-5950 |

10. 주요 절차



- 참고 1. 처분(매각)공고 대상지
- 2.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(별지4)
- 3. 입주심사 평가기준

[참고1] 처분(매각)공고 대상지



[참고2]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(별지4)

○ 농생명융합 거점지구

| 구 분 | | 첨단과학산업단지 (1단계) |
|----------|----------|---|
| 산업 육성 구역 | 관련 규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라북도 고시 제 2016-73호 (2016. 04. 29) |
| | 입주 가능 업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0, 11, 20, 21, 22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70, 75, 85에 해당하는 업종 - 「기초연구법」 제14조의2제1항의 기업부설연구소(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), 대학부설 연구소, 「중소기업창업법」 제2조제7호의 창업보육센터, 「과기출연기관법」 제8조의 연구기관, 「정부출연기관법」 제8조의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법」 제2조의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- 「산업집적법」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)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- 「산업집적법」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- 「산업집적법」 시행규칙 별표5 '첨단업종' 및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(첨단기술·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) * 단, 첨단기술의 발전,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효과 및 지역내 전후방산업 관련 효과, 지역산업간의 계열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추가 할 수 있음 -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대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(제조업은 공장등록,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) · 공급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(지식산업센터에 한함. 단,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) - 「신재생에너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- 단,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|
| | 환경 관리 기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산공정 단계별 「악취방지법」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* *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- 다만,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, 산업단지 조성취지, 환경·소음·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|

※ 숫자는 「통계법」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의미

[참고3] 입주심사 평가기준

| 평가항목 | | 주 요 심 사 내 용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기본 사항 | 우선유치대상 | 관리계획상 우선유치 대상 여부 |
| | 건축 계획의 타당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착공 및 준공시기와 부지 활용방안 • 건축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 • 건축계획의 적정성 및 주변 부지와의 조화 등 • 기타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 |
| | 재무안정성 및 자금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 및 안정성 • 건축 진행상의 자금 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• 부지매입 및 건축 진행상의 자금 조달 능력 및 가능성 등 |
| 사업 계획 | 사업수행 및 향후 파급효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의 적정성 • 기업 성장가능성 및 향후 전망 등 • 기업입주로 인한 기대(파급)효과(성장성, 안정성, 규모지표 등) |
| | 특구조성 목적과의 부합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주변여건 및 환경과의 조화 • 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환경관련 저해요인 저감방안 등 • 첨단산업 및 지식·정보산업 등에 부합하는 쾌적한 산업시설 구축 •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과 연계성 강화 등 • 산·학·연 주체와의 상호협력 활성화 여건 |

< 심사 참고사항 : 입주대상기업의 기본점검사항 >

입주자격 및 입주제한 여부

- 산업집적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
- 정읍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업종, 건축계획에 해당하지 않은 자
-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,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처리계획

우선 유치 대상

-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
-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(확장) 기업
- '중소기업 창업지원법'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(신청일 현재) 창업승인된 기업
- '국토계획법'상 주거, 상업,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
-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